

육아 지원 의료비 조성(助成)제도

조성대상자

가나자와시에 주민 능력이 되어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은 제외합니다.

출생 및 전입시에 「아동 의료비 조성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아동 의료증」을 교부합니다.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을 받고 계시는 경우

2023년 9월 진료분까지는 중학교 3학년까지「아동 의료증」을 사용하였지만, 2023년 10월 진료분부터는「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수급 자격증」을 사용해주세요.

조성내용

	2023년 9월 진료분까지	2023년 10월 진료분부터	
조성대상	입원·통원	입원	통원
대상연령	중학교 3학년까지	18세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소득제한	없음	없음	

※2023년 10월 진료분부터, 입원의료비 조성대상자 18세까지(18세 도달 후 최초 3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성범위

입원 조성액: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보험 외는 제외)

통원·조제 조성액: 창구에서 지불한 의료비(보험 외는 제외)의 1개월 분 합계에서 1,000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16~18세가 되는 연도의 자녀는 대상 외)

※조성액은 보험진료액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영수증의 금액과 수십 엔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①현물급부: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중 의료증에 기재되어있는 부담액을 창구에서 지불하는 방식



②상환제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일부 지불한 후, 시에서 조성금을 상환받는 방법.



<조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 (비급여항목, 문서료, 입원시의 식사비와 병실료 차액, 건강진단, 예방접종 비용 등)
- 건강보험자로부터 지급되는 고액요양비 및 부가급부금 등
-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

조성방법

①현물급부 방식

의료기관 창구에「어린이 의료증」을 제시하고, 창구 부담액을 지불해주세요. (의료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급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구부담액
 통원: 1의료기관당 1일 500엔 (500엔 미만일 경우는 그 금액)
 입원: 1의료기관당 1일 1,000엔→2023년 10월 진료분부터 무료
 조제: 무료(보험 약국에서의 보험 조제)

※의료기관이란 병원, 진료소, 약국을 뜻합니다. 의과와 치과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취급합니다.
 ※16~18세가 되는 연도의 자녀의 통원·조제는 대상 외(의료비의 본인부담금)

<현물급부가 불가능한 경우> ※②상환(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의료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의료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찰을 받은 경우
- 현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우

(현내 의료기관 중에서도 현물급부 대응이 불가능한 곳이 있사오니, 진료를 받기

- 전에 의료 기관에 문의·확인해주세요.)
- 치료용 보장구, 치료용 안경을 만든 경우
- 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이용한 경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병원 등의 창구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1개월 분 합계에서 1,000엔을 뺀 금액이, 약 3개월 후에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성금 청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1】 1개월 동안 A병원과 B병원 (의료비 500엔 미만)과 C약국에서 진찰을 받은 경우

	창구부담액	조성액
시내A병원	500円	} (500+300+0)-1,000 → 0円
시내B병원	300円	
시내C약국	0円	

【예2】 1개월 동안 3일간, 같은 병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은 경우

	창구부담액	조성액
시내D병원	500円	} (500+500+500)-1,000 = 500円
시내E병원	500円	
시내D병원	500円	

【예3】 하루 동안 E종합 병원의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창구 부담액은 **합계 500円까지** (※치과는 예외로 별도 요

	창구부담액	조성액
시내E병원(내과)	500円	} (500+0+500)-1,000 = 0円
시내E병원(안과)	0円	
시내E병원(치과)	500円	

※입원의 경우「한도액 적용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으실 경우 현물 급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인증서」에 관해서는, 가입해 계신 건강보험자에게 문의해주세요.

②상한제도

현물급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창구에서 의료비의 본인 부담액을 지불한 후, 가나자와시에 **조성금 청구 수속**을 해주세요.
(신청은 한 달 분을 모아서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해주세요.)

고액요양비 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요양비 능 지급 결정 통지서 능 고액요양비 등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고액요양비 등의 수속에 관해서는 가입해 계신 건강보험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조성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에 지정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구수속에 관하여>

● 필요한 것

- ①아동 의료증
- ②아동의 건강보험증
- ③영수증(원본)

영수증은 환자 성명, 보험점수, 진료년월일, 영수금액, 의료기관명 등

이 기재된 것이 필요합니다.

- ④도장(認め印)
- ⑤고액요양비 능 지급결정 통지서 능 고액요양비 능의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는 것(고액요양비 능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하는 곳

시청 1층 복지와 건강의 종합 창구
각 시민센터(森本・金石・犀川・安原・額・押野・浅川・泉野・元町・新神田・駅西・湊・本町・近江町)
각 복지건강 센터(泉野・元町・駅西)

● 신청기한

진료를 받은 다음 달 이후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2015년 10월 진료분→2017년 10월 말일까지 청구해 주세요.)

<우편 신청 방법>

신청서를 기입, 날인 하시고 영수증 원본과 함께 가나자와시 건강정책과 앞으로 보내주세요.
신청서는 가나자와시의 홈페이지(いいねっと金沢)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金沢市 子ども医療費 申請

검색



● 다음의 경우에는 연락해주세요.

내용	필요서류
가입한 보험증이 바뀐 경우	의료증, 아동의 새로운 보험증
아동 및 보호자의 주소, 성명이 바뀐 경우	의료증
입금계좌의 변경	의료증, 보호자의 계좌를 알 수 있는 것, 도장
의료증을 분실, 파손한 경우	의료증(분실시에는 불필요), 아동의 보건증

※계좌명의인의 서명이 변경된 경우도 신고해주세요.

시청 1층의 복지와 건강의 종합 창구(福祉と健康の総合窓口), 각 시민센터, 각 복지건강센터에서 필요한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 의료증의 반납

시외로 전출하게 된 경우, 의료비 수급 자격을 잃은 경우,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대상이 되었을 경우, 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료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증을 건강정책과로 신속하게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에 진찰을 받고 싶을 때는

가나자와시 광역급변센터(소아과・내과)
金沢市広域急病センター(小児科・内科)

【소재지】가나자와시 니시사이넨 3-4-25 에키니시복지건강센터 1층
金沢市西念3-4-25 駅西福祉健康センター 1階

【요양시간】매일/19:30~23:00

【의료기관 안내】TEL 076-222-0099 FAX 076-222-5566
매일/19:30 ~ 다음날 아침 9:00

가나자와시청 건강정책과
〒920-8577 가나자와시 히로사카1-1-1
TEL: 076-220-2233
FAX: 076-220-2231